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



## "이직하려고…" 반도체 핵심기술 등 68개 영업비밀 자료 유출한 삼성전자 전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내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 한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술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반도체 핵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기술로 고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 30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싣고 사업장을 빠져나가려다가 보안을 위해 사업장을 드나드는 차량을 검문검색하던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6천800여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자료를 확보하고 이씨를 구속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씨는 전무까지 승진했지만 지난해 인사에서 입사 당시부터 몸담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나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빼돌린 자료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임원

### 기술유출 ‘호들갑’ 삼성전자 전직 임원 무죄 확정



2016년 10월 이아무개 전 삼성전자 전무는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및 스마트폰 핵심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국 업체의 추격이 가팔라진 때여서 삼성과 수사기관의 ‘기술 유출’ 주장은 여과 없이 보도됐다. 미국 반도체업체에서 근무하다 2008년 삼성전자에 ‘상무급’으로 메모리사업부에 스카우트된 이 전 전무는, 2015년 말 전무로 승진한 뒤 비메모리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몸이 아파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던 그는, 병가 중이던 2016년 7월29일 자정께 사무실에 들른 뒤 삼성전자 기重工업장 밖으로 나서다 입사 뒤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정밀 검색’을 당했다. 그의 차에서는 기술자료를 출력한 보안용지 31장이 발견됐다. 삼성은 그를 산업 기술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그의 집에서는 2009년부터 출력해 보관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전 전무는 ‘평소 공부 습관대로 자료를 출력해서 본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넉달 전 그가 헤드헌팅 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유출한 40대 적발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의료 진단기기 생산 기술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사용한 피의자 A씨와 동종업체 B법인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춘천시 소재 ○○주식회사 연구 개발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본인 및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하던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피의자 A씨가 반출한 파일 중, 공정규격서 파일은 해당파일 1개만으로도 즉시 동일 진단기기를 생산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파일이었으나 신속한 수사로 상용화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기업은 연매출 550억 원 이상의 건실한 코스닥 상장업체로, 9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비를 투입하여 상용화한 중요 영업비밀이 동종업체에 유출되는 피해를 당했으나 상용화에 이르지 않아 다행스럽다는 입장이고 해당기술을 유출한 피의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물론 국내유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2017. 5. 18. 뉴스기사

## 첨단 낙하산 제조 기술 유출...공장도 폐쇄

첨단 낙하산 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던 중소기업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업체는 이 때문에 공장까지 폐쇄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낙하산을 펴고 활공하던 한 남성이 사각형의 보조 낙하산을 펼칩니다.

기존 원형 낙하산에 비해 가볍고 빨리 펼쳐지는 데다 흔들림도 적어, 2년 전, 실용성 높은 기술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사장이 모 씨가 이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공장까지 만들고 판매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동극(경감/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유럽에서 판매하기 위해 스위스업체에서 인증을 받는데, 생각지 않게 단 한 번에 인증을 받다 보니 거기서 욕심을 생겨서..."

이 씨 등은 기술만 빼돌린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해 버려**, 해당업체는 가동 중이던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피해업체 대표(음성변조) : "기술을 아주 통째로 들고 나간 거죠. 회사에다가 자료를 보관한 게 하나도 없이. 강원도 공장에서는 그쪽은 중단되고..."

지난 2월 국내 조선업체에서 LNG선의 설계기술이 유출됐고 지난해엔 국내 디스플레이업체에서 영업비밀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등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5년간 239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송방망이 처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무(교수/중앙대 산업보안학과) :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보면 벌금, 집행유예 실형 선고율이 낮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송방망이 처벌'이다."

지난해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은 19조 원, 하지만 기술보호 예산은 이 가운데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7. 5. 12. 뉴스기사

## 핵심 기술·인력 빼낸 기업 영업비밀침해죄 78억 손배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낸 신설 기업 임직원과 해당 법인이 영업비밀침해죄로 78억원의 손해 배상 처벌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초경합금 제조업체인 S사가 경쟁사인 K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산정한 71억9천만원보다 6억원 가까이 늘어난 손해배상 금액이다.

S사는 1976년 설립된 초경합금 제품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때 매출 43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S사는 2011년 5월 회사 대표이던 A씨가 퇴사해 K사를 설립한 뒤 4년만에 매출액이 150억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라섰다.

이에 S사는 “K사 측이 설계자료를 포함한 제조 기술과 핵심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오래된 일본 거래처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왔다.

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S사에서 K사로 이직한 직원은 공정별 핵심 기술자를 포함해 32명이다.

법원은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자료로 피고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 현대기아車 영업 비밀 해외 유출한 일당 검거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 설비도면 등 영업 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A사 대표 박모(5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사 사업수주를 위해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을 인도 및 러시아 자동차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협력업체 자격으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영업비밀을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 협력업체는 차량 제작을 위해 이 문서들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끝나면 폐기해야 하지만 A 업체는 몰래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씨 등이 유출한 내용은 차량이 최고 성능과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기준인 '차체 검사기준서' 와 자동차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특수설비인 '지그' 설비도다. A 업체는 2014년 5월 인도의 자동차 제조업체 마한드라그룹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지그 설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현대기아차의 지그 기술표준을 독자기술인 것처럼 명칭만 살짝 바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러시아 자동차 회사 UAZ의 프로젝트 수행 중 또 다시 현대기아차의 지그 설비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출 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사 인터넷 서버를 이중화하고 수시로 서버를 감추는 등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현대기아차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118억 원 규모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삼성·LG디스플레이 영업비밀, 日 기업에 유출

## 삼성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JNC 영업직원 등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입건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 배모(37)씨와 일본 액정 제조업체 JNC 영업직원 장모(43)씨 등 5명과 JNC 한국 법인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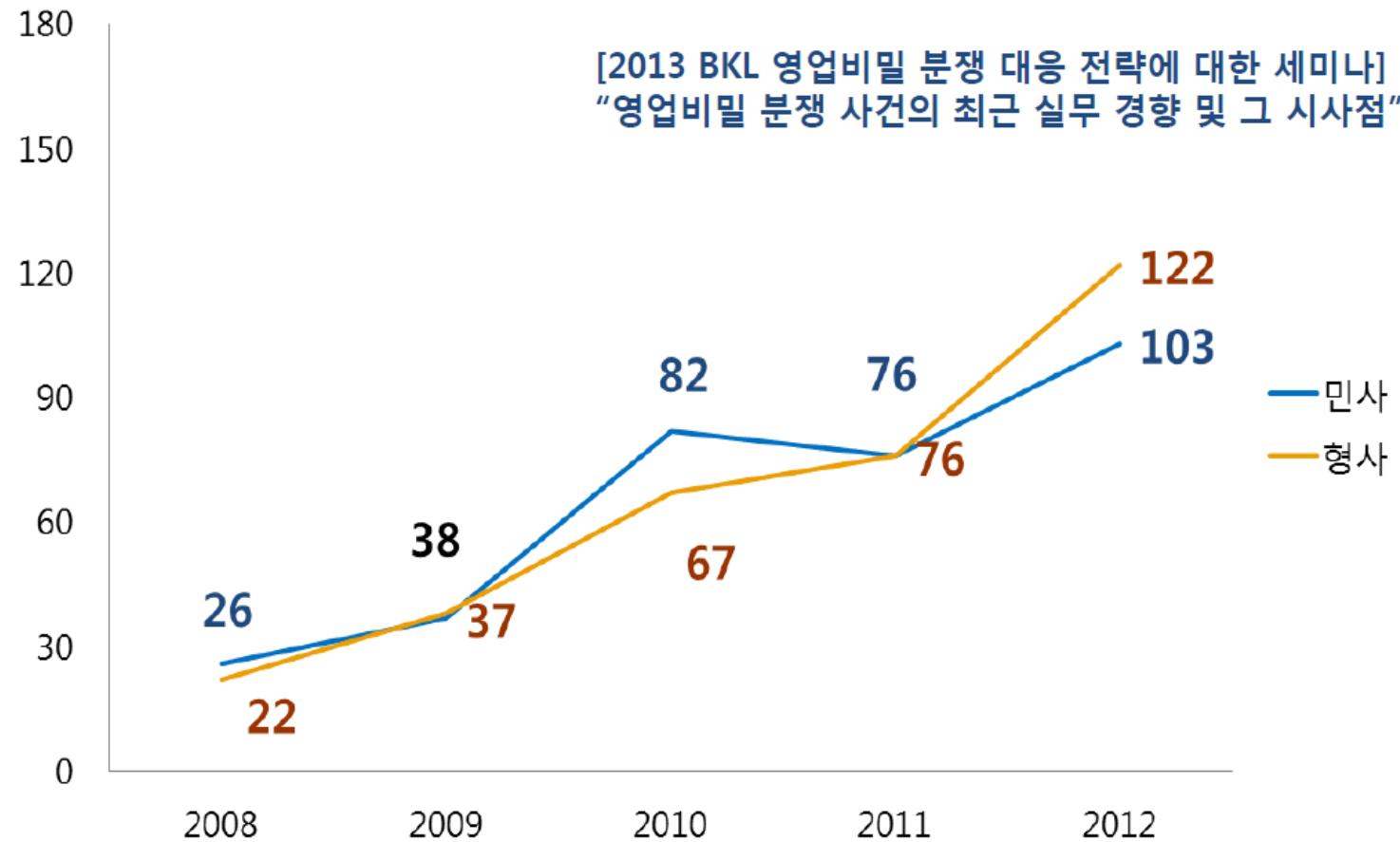
배씨와 장씨는 액정단가 등 영업과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진행된 비공개 신제품 비교분석 설명회에서 휴대전화로 내용을 녹음, 이를 JNC에 넘기는 등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액정단가 등의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역시 지난 2014년 10월,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LG디스플레이 구매담당자 몰래 액정단가 및 주문예상량 등이 담긴 엑셀 파일을 촬영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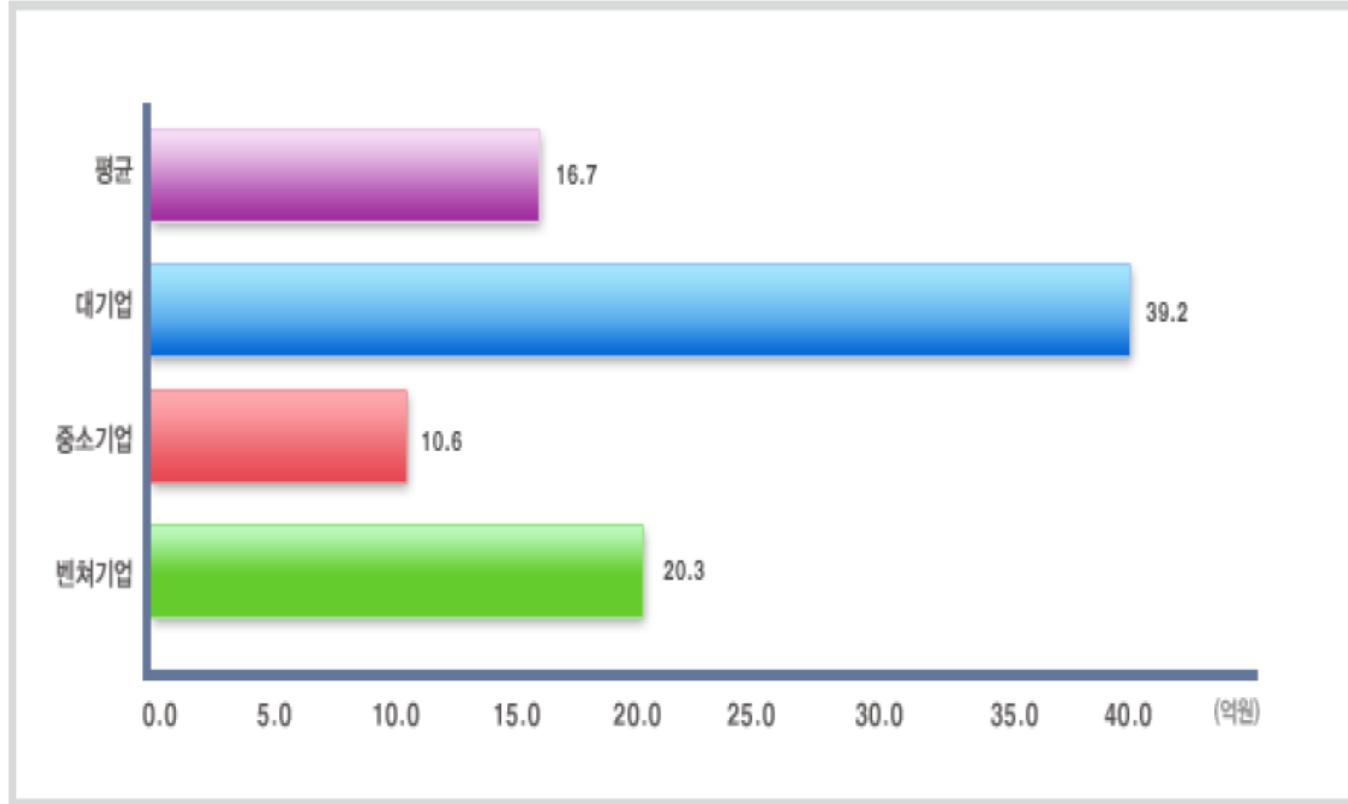
# 영업비밀 침해관련 통계(1)

## 영업비밀 민·형사 사건 수의 추이



# 영업비밀 침해관련 통계(2)

## 기술유형별 기술유출 피해 금액(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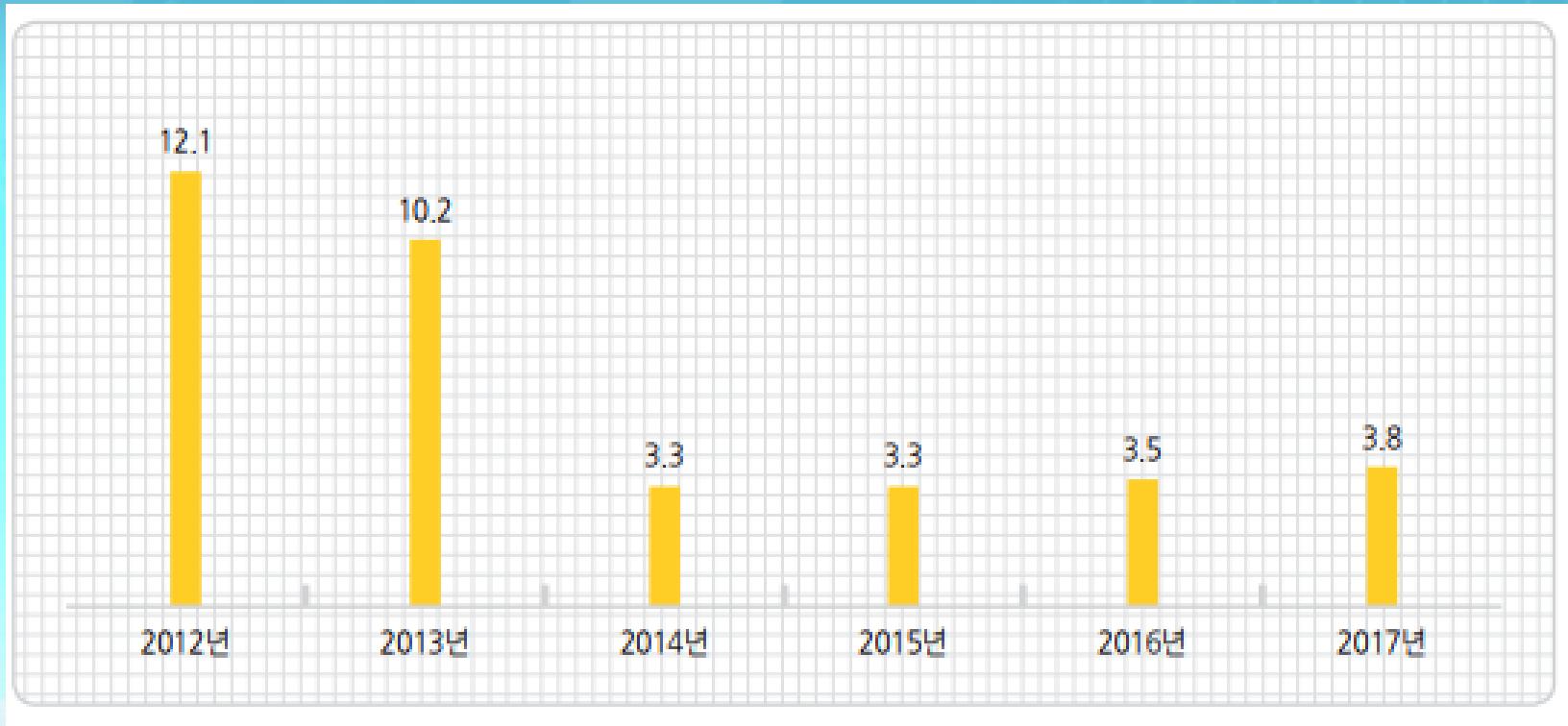


주)2008~2010년 누적 통계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영업비밀 침해관련 통계(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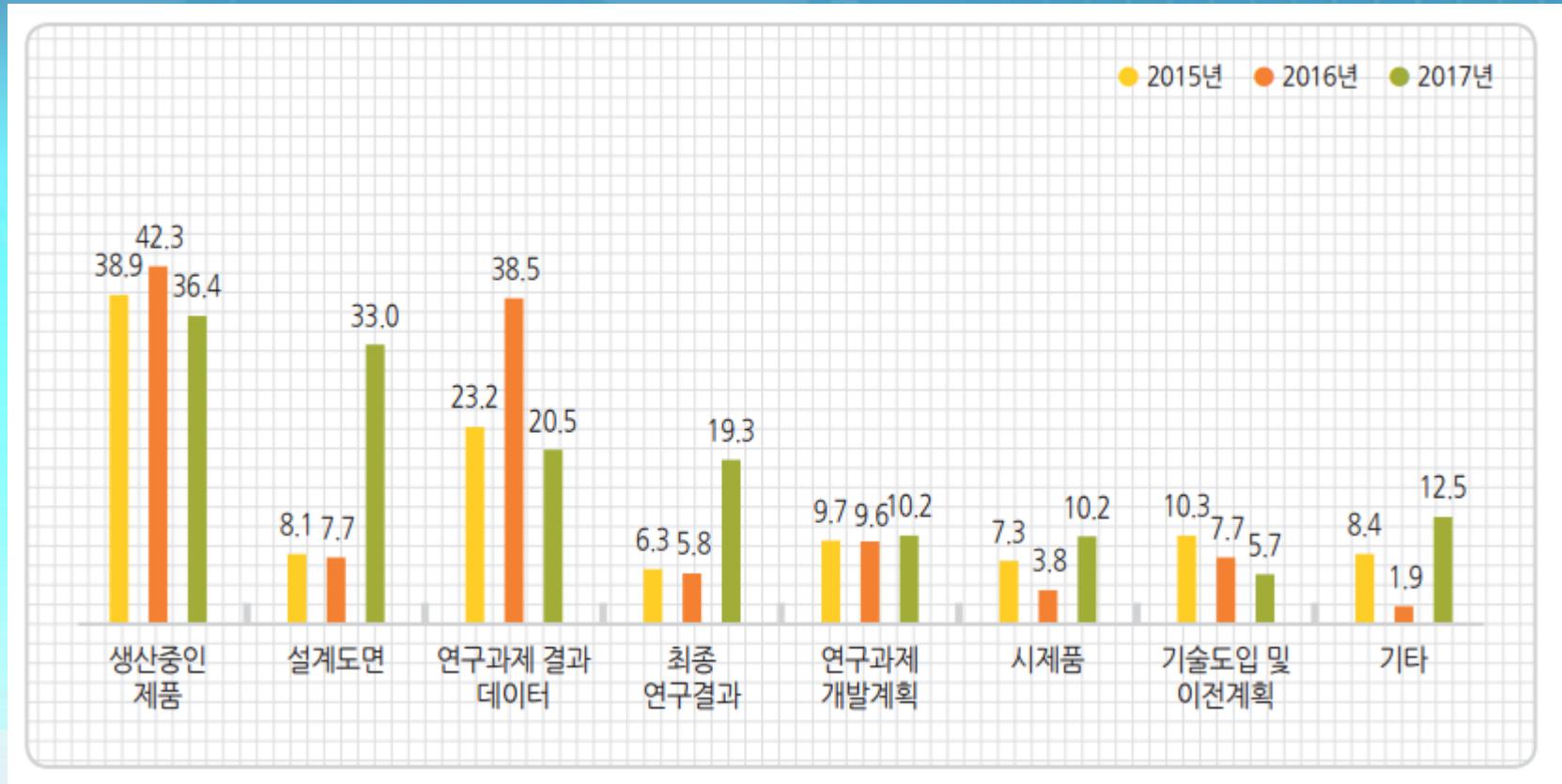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술유출 경험(%)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2018.01]]

# 영업비밀 침해관련 통계(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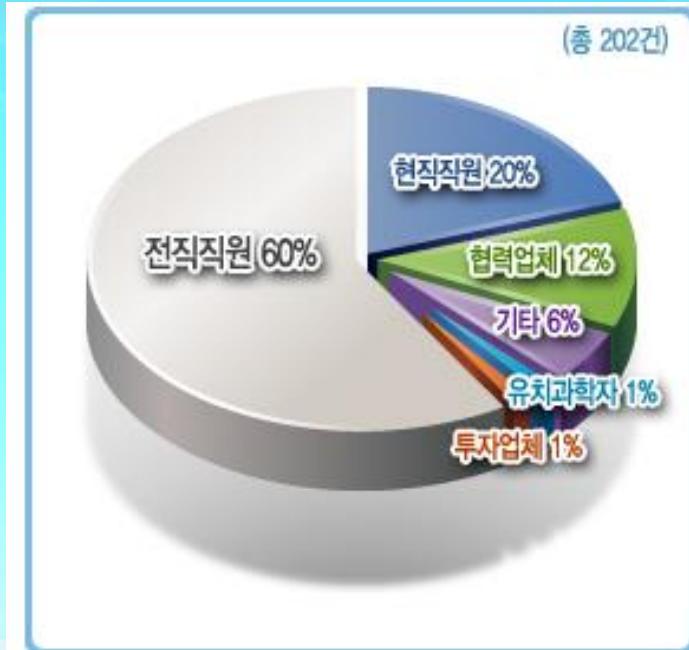
## 유출된 기술자료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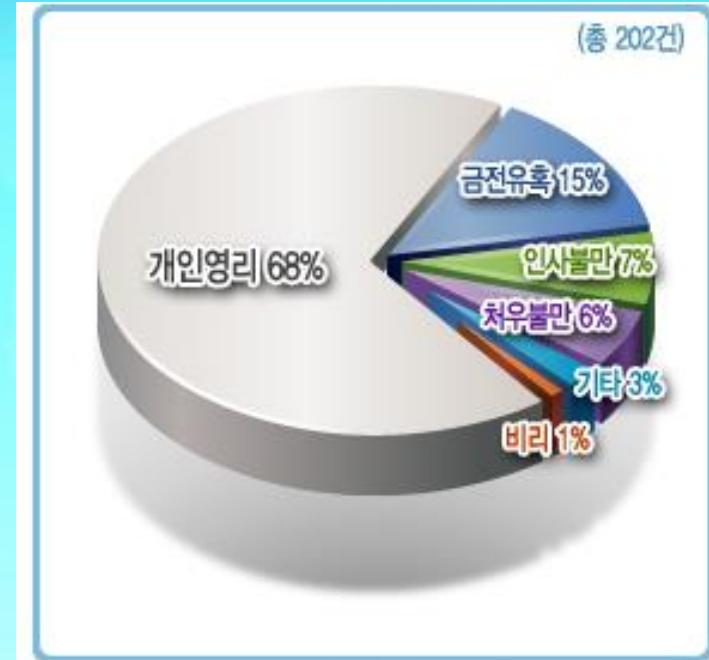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2018.01]

# 영업비밀 침해관련 통계(3)

## 유형별 기술유출 현황 분석



기술유출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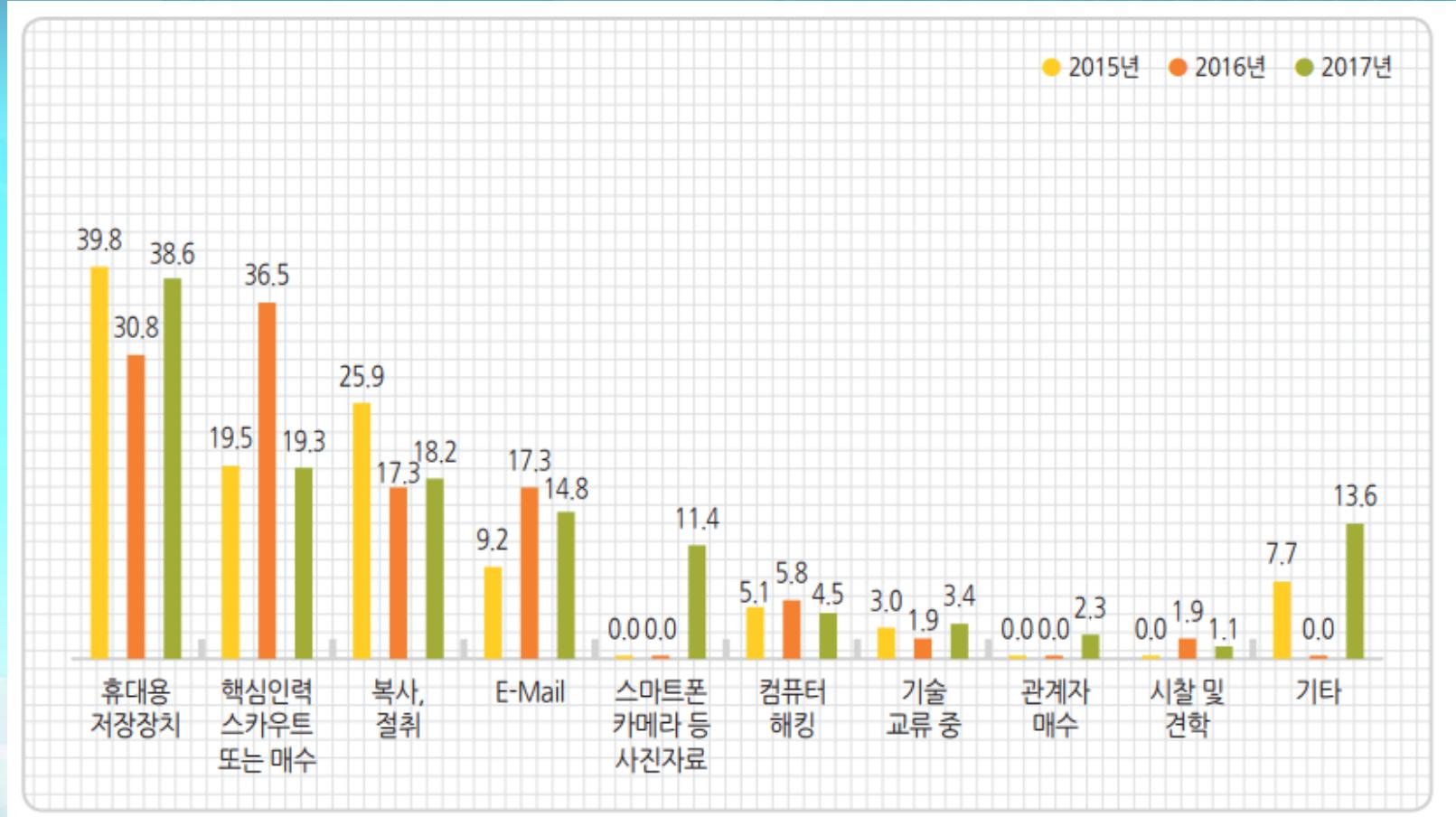


기술유출동기

[산업기밀보호센터, 2012]

# 영업비밀 침해관련 통계(3-3)

## 기술정보 유출 수단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2018.01]

# 특허와 영업비밀 비교

## 특허제도와 영업비밀 보호제도 비교

구 분	특 허	영업비밀
목 적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보호조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
보호대상	0 기술적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0 기술정보 : 특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술, 설계방법, 설계도면, 실험데이터, 제조기술, 제조방법, 제조공정, 연구레포트 등 0 경영정보 : 고객명부, 거래선명부, 판매계획, 입찰계획 등
등록유무 및 권리성	특허요건에 관한 심사 후, 설정등록에 의하여 독점배타적 권리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허권자는 설정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사용</li><li>- 따라서, 제3자가 특허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li></ul>	등록절차가 없으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고, 영업비밀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실상태 그 자체를 보호</li><li>- 따라서, 제3자가 동일한 내용의 영업비밀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없음</li></ul>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비밀로서 관리되는 한 무한
공 개	공개를 전제로 함	비공개
이전성	실시권 설정 가능	비밀유지를 전제로 실시계약이 가능

# I

##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개요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목적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개요

## 영업비밀의 개념

- ④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예를 들면, 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예를 들면,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

## 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④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



#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개요

##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 ⑤ 영업상의 이익 또는 사실상의 자산으로 이해되고 있음
- ⑥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물권 또는 산업재산권과 같은 권리성은 인정하지 않음

### 이유

- ①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공개의 대가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침해행위의 성질과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의 취득을 금지시키는데 착안한 제도
- ② 물권 또는 산업재산권과 같은 공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③ 영업비밀이 배타적 권리의 일종이라면 그 내용이 공개된 후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

따라서,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관리 의무를 전제로 어떤 정보가 비밀로서 유지 · 관리되고 있는 동안 사실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파악하여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 II

#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의 요건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성  
비밀관리성

## 영업비밀의 요건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기술상의 영업비밀

시설 및  
제품 설계도

기계설비  
및 장비

실험데이터

물질의  
배합방법

물건의 생산  
및 제조 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생산라인 및  
공정 설계도 등

기업이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특수  
장비 등

시제품의 성능  
실험, 의약품  
효능 시험,  
기계장치  
시운전 데이터  
등

반응순서,  
원료의  
배합순서,  
배합비율,  
시차 등으로  
미공개되고,  
역설계로  
알아낼 수 없는  
것

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방법으로  
비법이나  
미공개된 것

연구개발과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 경영상의 영업비밀

### 원가분석 등 관리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거래처 정보,  
인사/재무  
관리 정보,  
경영분석 정보

### 경영전략 등 주요계획

경영전략,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생산 계획,  
마케팅/  
판매 계획

### 고객 명부

지역별  
고객리스트,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류표  
및  
대리점/영업점  
영업자료

### 매뉴얼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 기술 서류  
그 회사의  
독특한  
방법이나  
기법을 담고  
있는 모든  
매뉴얼

## 비공지성

비공지성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
- 경쟁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제한없이 입수할 수 없을 것

### ▶ 관련판례

#### 2002다60610

-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 2008도679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상대적 개념의 비밀성

- ④ 법률상 비밀은 상대적 비밀로 충분함
- ⑤ 비밀보유자에 의하여 일정하게 한정된 인적범위가 형성되고,
- ⑥ 비밀대상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인적 범위가 확대되어도 비밀은 지속됨

### ▶ 관련판례

#### 2001노868

- 절대적인 비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 경제적 유용성

### ▶ 의의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비용과 노력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그 정보가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증거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음

경제적 유용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밀이라도 경제적 관점에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음

유용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유용하다고 함은 경쟁우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 정보가 사업 활동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절약, 경영효율의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함.



## 역설계와 경제성

별다른 시간이나 노력 없이도 그 정보를 육안으로나 간단한 분해분석  
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독립적인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특허와 달리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으나,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지 않음

### ▶ 관련판례

#### *98도4704, 2003카합572, 2005노502*

-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비밀관리의 정도

- 비밀관리는 상대적인 개념
  - :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비밀관리성 판단시 법원은 침해 기업의 규모를 고려
  -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의 판단기준은 완화된 기준

### ▶ 관련판례

#### 2006고단4808

-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같은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 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한,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각자 그 접근 권한에 따라 고유의 식별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이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로그기록을 남겨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를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안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그 담당자의 사전 허락에 의한 접근만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 비밀관리의 의사

비밀로서 관리된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의 보유에 대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의사가 있고 당해 정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누설시키지 않기 위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가 필요함

### ▶ 관련판례

#### 2004가합10118

-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약서를 받는 외에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거나, 연구소에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구실 관계자들에게 연구결과 등이 모두 공개되고 별다른 접근제한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술정보가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 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 ▶ 영업비밀관리현황 예시



### 영업비밀 관리

- 영업비밀보호 규정
- 영업비밀 등급부여 현황
- 정기적인 등급분류 현황
- 영업비밀 접근권한 현황
- 영업비밀 반출통제 현황



### 인적관리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현황
- 영업비밀 누설방지 서약서 [신규, 재직, 계약]
- 영업비밀 보상제도 실시현황
- 영업비밀보호 위반 징계현황
- 외국인, 퇴직자, 외부인력 서약서 및 보안교육 실시현황



### 물적관리

- 관리시설 설정 현황 [보안구역 등]
-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현황 및 출입통제 데이터 [CCTV, 카드키, 지문인식]
- 개인PC관리 데이터 [로그인/복사/저장 기록]
-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보안USB사용/기록 저장]
- 통신망 보안점검 현황
- 서버 및 DB 접속현황 [로그인/복사/저장 기록]

# III

## 영업비밀 침해유형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유형

부정취득과 관련된 침해행위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와 관련된 침해행위

## 부정취득과 관련된 침해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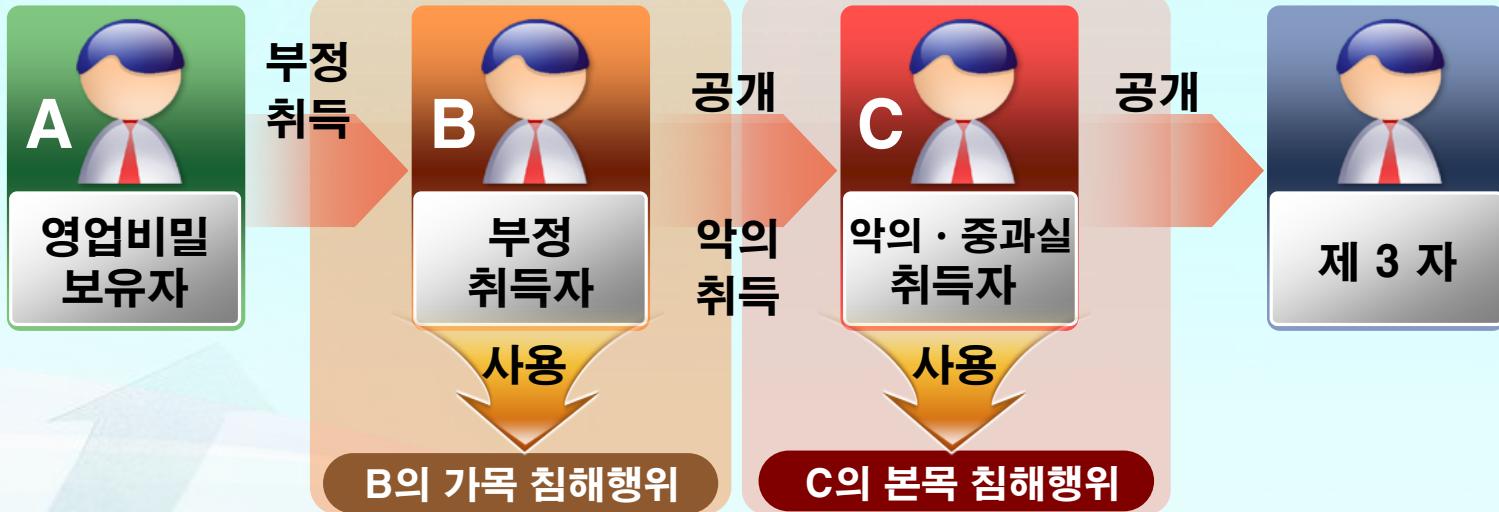
### 1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 사용 · 공개하는 행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법 제2조제3호 가목)



## 2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나목)



## 3

## 선의취득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다목)



##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와 관련된 침해행위

### 1 영업비밀을 부정공개 · 사용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라목)



## ▶ 유의점

### ④ 비밀유지 의무

- 법률에서 그 의무를 명시한 경우
-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발생)
-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또는 계약종이거나 계약만료 후를 묻지 않음

다만, 퇴직 후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영미법상 확립된 판례는 종업원이 일반기능 · 지식 · 훈련 · 경험(General skill, knowledge, training, and experience)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비록 고용기간 중 사용자의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자기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영업비밀과 종업원의 일반기능 · 지식 · 훈련 · 경험과의 구별하는 목적은 영업비밀 보호와 종업원 이동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 2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 · 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마목)



### 3 선의취득후 악의 · 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바목)



# IV

##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형사적 구제수단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금지 및 예방청구권

-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가능

###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 금지 또는 예방청구 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 청구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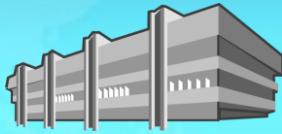
### 신용회복조치청구권

- 신용이 실추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거나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선고 2010카합172 결정

1. G사의 임직원들이 T사로 이직



국내 대기업



러시아 회사의  
국내 자회사

2. T사의 승용차(C-100) 개발과정에서 G사의  
승용차(라세티)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을 취득  
또는 사용

3. G사는 T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결정]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개발한 모델명 c-100승용차용엔진, 반제품 모듈(ckd, complete knock-downkit) 등 반제품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생산의뢰하거나 위와 같이 생산된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수출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례

- ✓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

영업비밀 사용금지, 공개금지, 폐기청구



잉크제조방법이 기재된 개인소유노트



스카우트에 의한 이직

연구실장 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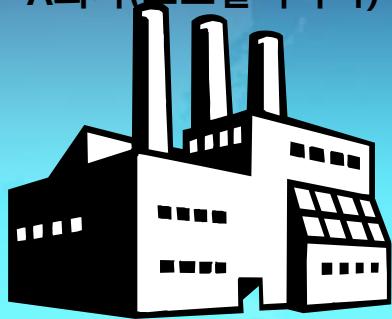


- ✓ 별다른 연구개발실적 없이 단기간에 유사제품 (형광펜)을 생산하여 문구박람회에 전시함

[논점1] 영업비밀인가?	[논점2] 甲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가?	[논점3] 노트폐기청구는 가능한가?	[논점4] B회사의 책임은?
<p>A회사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u>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u>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p>	<p>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u>신의칙상 또는 목시적으로</u>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p>	<p>피고 甲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노트에 쓰인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잉크를 제조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B회사에 공개하는데 제공되고 있다면 이 사건 영업비밀이 기재된 위 노트는 '<u>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한다고</u>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 사건 노트에 대한 폐기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p>	<p>B회사는 단지 피고 甲이 원고 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한 것이 아니라 <u>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면서 甲이 A회사로부터 습득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를 고용하여</u>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A회사가 보유하는 기술정보를 취득하였다.</p>

## 판례

A회사(초코찰떡파이)



의정부지법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원재료 및 배합비에 관한 기술



이적

B회사(찰떡쿠키)



연구개발부장 甲

특허 등록 후 보존기술 새로 개발

유사제품 생산·판매

### 1. 영업비밀 침해 여부

피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찰떡쿠키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생산·판매하는 등 피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영업비밀 보호기간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소외인이 원고 업체를 퇴직한 날인 2003.6.30.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이라 봄이 상당하다.

### 3.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영업비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영업상의 이익이란, 침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금액에서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필요한 변동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한계이익)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찰떡쿠키의 매출액에서 이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변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외국에서의 사용을 위한 공개의 경우 가중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 벌금 병과가능)
- 법인, 미수, 예비·음모 처벌 가능

## 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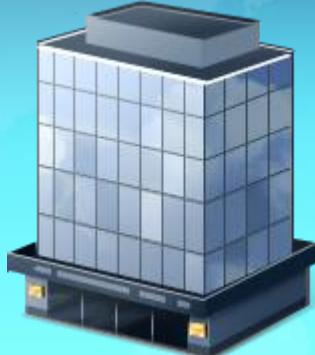
- 업무상 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물손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판례

H자동차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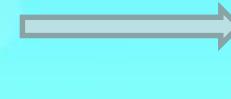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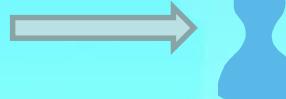
자동차관련도면



중국 자동차회사



본사 KD사업팀 중국담당

구매총괄본부  
해외국산화과장

240만달러 상당의 대가 제공

- 선고형량 : 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
- 적용법조 : 업무상 배임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논점 : 일부 도면은 다른 직원의 ID와 PW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만 받은 후 유출하지 않고 삭제함 → 중지미수??  
 [판례]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 V

##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의미  
법적 조치

#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이란?

- ✓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 ✓ 전직금지약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됨
- ✓ 다만, 전직금지의 내용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직금지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인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 (다만, 판례에서 1년~2년 정도만 인정)

##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V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 경업금지약정의 형식과 체결시기

#### 약정의 형식

- ✓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포함 가능
- ✓ 별도의 약정 체결도 가능
- ✓ 서약서나 확인서 작성도 가능

#### 약정의 체결시기

- ✓ 약정 작성 시기는 입사 시, 재직 중, 퇴사 시 모두 가능
- ✓ 입사 시 또는 재직 중 작성된 약정은 유효성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퇴사 시 추가로 약정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확약서를 작성. 교부한 시기는 원고 경영의 ○○○○ 업체에 고용되어 불과 약 5개월 가량 경과된 때로서, 이와 같은 시기에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사용자인 원고가 요구하는 확약서의 작성. 교부를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

[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1가합19030 판결]



# V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법적 대응

- ✓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 ✓ 손해배상 청구
- ✓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 청구

[참고]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사례

### 주 문

1. 피신청인은 2014. 3. 31.까지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부사장, 사내이사, 기타 임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동업계약, 고문계약, 자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보조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V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 판례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판결

###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

#### 사건요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대기업에 입사하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 판단근거

- ① 회로배치공정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알게 된 정보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
- ② 입사 후 신청인의 회로배치 업무 관련 기술적 정보를 익힐 수 있었으며, 실제 회로배치 업무에 투입되어 약 5개월 동안 'BACKEND'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
- ③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자금을 지원한 기간과 피신청인이 약정한 의무 근무 기간, 'FRONTEND CHECKLIST', 'BACKEND CHECKLIST' 등을 만들기 위하여 신청인이 투여한 비용과 노력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기간이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음**
- ④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29,991,000원이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전직을 금지하는 대가는 지급된 것
- ⑤ 피신청인이 삼성전자에 취업하기 위하여 신청인과의 3년 동안 근무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고 스스로 퇴직



# V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 판례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판결

###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

#### 사건요지

보험 회사 지점장으로 재직 중 퇴직 이후 2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고 희망퇴직 후 경쟁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전직하자 전직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

#### 판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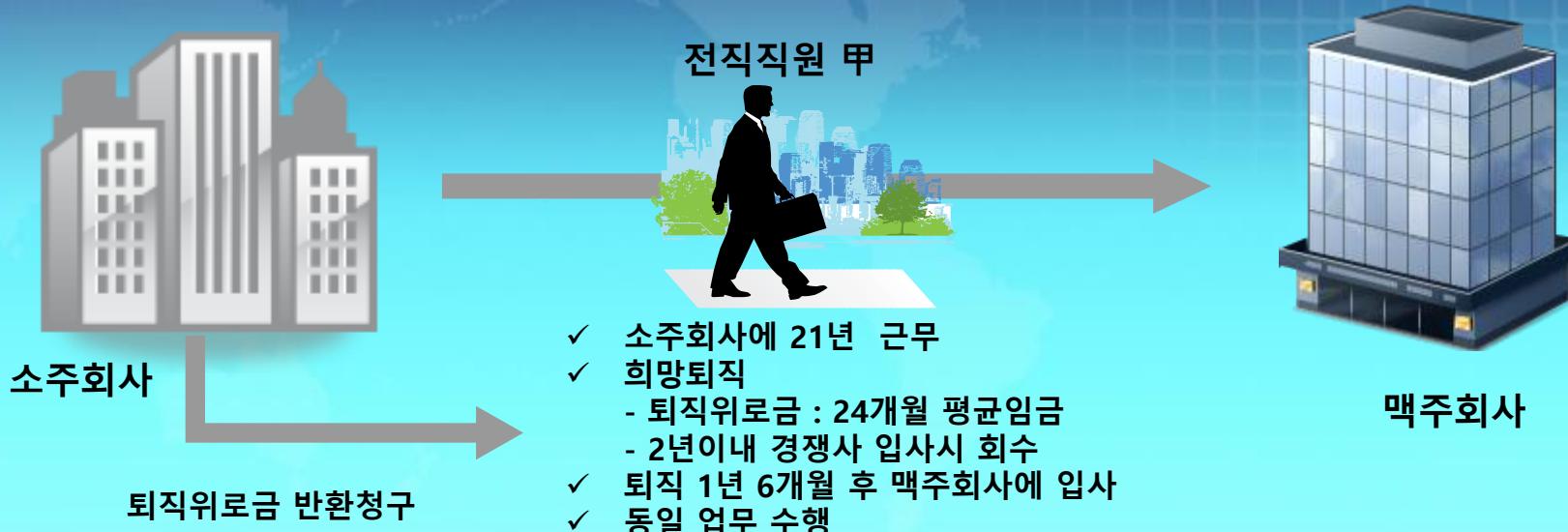
- ① 보험계약은 고객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므로,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가 회사인 원고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보험회사인 원고의 지점장이 업무상 특별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② 경업금지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지역적 범위에도 제한이 없으며, 그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임
- ③ 원고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희망퇴직자에게도 지급되었고, 그 재원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각출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 위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

# V

#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8.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 경업금지약정은 유효

- 주류 회사의 프로모션계획,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판매·영업 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 방법·노하우의 경우 영업비밀이거나 최소한 보호가치 있는 정보
- 경업금지기간 2년/ 9개 경쟁사의 제한은 과중하지 않음
- 퇴직위로금은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

### 손해배상액은 감액

-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경업금지 약정 제한적으로 해석
- 일률적 전액 반환은 과도함
-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¼로 감액